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결정사안】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헌납 시킨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명을 구속하였고, 그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를 후 석방된 사건이다.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연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전 문】

【사 건】 라-961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

【신청인】 김영우

【결정일】 2007. 5. 2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5·16 쿠데타 직후인 1961. 5. 28. 삼화고무, 조선견직(주), 한국생사(주), 부산일보 등 10여 개의 기업을 보유한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金智泰)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기업인 15명과 함께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되어, 국가를 위해 재산을 기부한다는 각서를 쓰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6. 30. 석방된 후, 12. 30. 5억 4,57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1962. 3. 27.경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보라 함)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임직원 8명을, 4월 초 김지태의 처를, 4. 23. 일본에서 귀국한 김지태를 각각 구속하였고, 군검찰은 이들을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이하 군법회의라 함)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5. 25. 김지태가 그 소유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문화방송 등 언론 3사 주식 및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부산지역 토지 10만여 평에 대한 포기각서에 날인을 하고, 다시 6. 20. 기부승낙서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군검찰은 공소취소하여 모두 석방하였다.¹⁾

김지태의 위 헌납재산은 1962. 7. 14. 5·16장학회가 설립될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으며, 그 후 토지 10만여 평은 국가로 이전되었다.

신청인 김영우(피해자 김지태의 차남)는 이 사건 재산헌납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2006. 1. 27.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II. 의혹사항

1. 수사과정의 적법성 여부

김지태 등에 대한 중정의 구속수사 및 군법회의 재판의 적법성 여부.

2. 재산헌납의 강제성 여부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한 것이 최고회의 또는 중정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진헌납이었는지 여부.

3. 헌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김지태가 헌납한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 10만여 평의 귀속처 및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1) 1962. 6. 22.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재판장 준장 박기석), 김지태 등에 대해 군법회의법 제37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소기각 결정.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은 제1조에서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진실규명 대상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실규명의 범위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상해, 살인, 불법체포 또는 고문에 의한 허위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또는 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범죄의 실체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살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위증, 증거인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언론 및 노동권, 재산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김지태의 사유재산인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 헌납이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에 이 신청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라 함)는 2005. 7. 22.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을 추진한 것”이며, “박정희 정권이 중정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헌납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본법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진실규명 신청이 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김지태 소유재산 헌납과정에 국가기관의 강압이 개입하였을 경우에는 진실 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에 속하는 만큼 조사개시를 하여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고,

국정원 발전위의 조사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반성적 차원의 조사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법률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이루고 국민통합을 위해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를 하게 되므로 그 결과에 있어서 법률적,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강제헌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국정원 발전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이후에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를 거쳐 2006. 12. 5. 기본법에 의해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조사방법과 경과

1. 자료조사

- 조사 자료 1-13권 각 100여 쪽
 - 열린우리당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 조사결과보고서 91쪽 및 국정원 자료 438쪽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김지태 등 부정축재자 관련자료 133쪽(특정인부정축재최종결정서 등)
 - 국가기록원 보존 자료
- 정수장학회 강탈인가? 헌납인가? (라디오프로그램 CD)
 - 한국방송공사 보도자료
- 기부승낙서, 기부증서 등 관련자료 42쪽
 -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진흥과) 보존자료
 -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 국유재산 등 관련자료 6쪽
 -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보존자료
- 진주지 “5·16과 1군” 13쪽

- 재경진주향우회 보관자료

2. 진술 청취

- 신청인 김영우(피해자 김지태의 子, 2006. 8. 19. 및 2007. 5. 3. 진술청취)
- 중정 수사관 박○○(중정 부산지부장, 2006. 11. 20. 진술청취), 김○○(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2006. 11. 22. 진술청취)
- 참고인 이성호(김지태의 변호인, 2006. 9. 14. 진술청취), 정순태(부일장학회 간사, 2006. 9. 19. 진술청취), 조용태(한국생사 무역과장, 2007. 1. 5. 진술청취), 배다지(국제신보기자, 2006. 12. 22. 진술청취), 김상찬(국제신보기자, 2006. 12. 22. 진술청취), 정치근(중정 파견검사, 2007. 1. 4. 진술청취), 김수철(김지태 기념사업회 사무차장, 2006. 12. 22. 진술청취), 김정옥(김지태 기념사업회 간사, 2006. 12. 22. 진술청취), 김원(전 5·16장학회 실무간사 김석겸의 子, 2006. 10. 18. 진술청취), 김광석(김지태의 비서 김대운의 子, 2006. 2. 9. 진술청취), 소종섭(시사저널기자, 2007. 3. 21. 진술청취), 김석주(재경진주향우회부회장, 2007. 3. 21. 진술청취),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2007. 5. 2. 면담조사), 기타 원영재 외 6명(2006. 2. 23. 진술청취),

이 사건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의혹사항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신청인, 수사관, 참고인 등 23명에 대해 진술청취 등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V. 조사결과

1. 사건의 배경

가. 시대적 상황

군부세력은 1961. 5. 16. 쿠데타를 일으켜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주도 세력은 기본정책으로 혁명공약 6장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금융동결, 공항 및 항구 봉쇄, 의회해산, 전 각료 체포령을 내렸으며,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정권을 접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61. 5. 19.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함)로 개칭, 같은 달



20. 최고회의에 각 부문별 통치조직으로 행정, 내무, 외무국방, 재무, 법무, 문교, 건설, 농림, 상공, 보사, 교통, 체신, 공보, 공안 등 14개 분과를 두었고, 각 분과위원으로는 현역 군인을 임명한 후, 6. 6.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동법 제24조 헌법과의 관계에서 비상조치법에 저촉될 경우 비상조치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스스로 국가기능상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즉, 동법 제9조에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최고회의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3조를 통해 최고회의가 내각수반 임명권과 내각임명에 대한 사전승인 및 해임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행정 각부로 하여금 중요정책 수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모든 조직을 통제하였고, 동법 제17조를 통해 최고회의가 사법에 관한 행정권을 지시, 통제하였으며, 동법 제18조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였고, 법원행정처장 및 일반법관 임명에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1962. 3. 21.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하자, 3. 24. 최고회의가 이를 즉각 수리함으로써 박정희 의장이 비상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계엄령 하에서 초헌법적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발생하였다.

나. 김지태의 이력과 중정의 평가

김지태는 1943. 5.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하였고, 8·15 후 조선건직·한국생사·삼화고무 등을 설립하였으며, 1968. 5. 생사수출조합 이사장, 1970. 한국생사협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지태는 1949. 9. 16. 부산일보를 인수하여 경영하였고, 1959. 9. 23. 최초의 라디오 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하여 경영하였으며, 1961. 2. 21. 한국문화방송을 발족시켜 12. 2. 서울지역 최초의 라디오 상업방송인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여 경영하였다.

1950. 5. 제2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1954. 3.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였으나, 1956. 12. 사사오입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자유당에서 해당행위자로 제명되었다가 1957. 5. 복당한 후 1958. 5.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정계 은퇴하였다.

1958. 11.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1960. 12. 모교인 부산상고에 부상장학회를 설립,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하였다.²⁾

5·16 후에는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소유기업체 탈세 등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5억 4,570만 원을 주식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정원이 제출한 김지태 자료에 의하면, 작성일자 미상 ‘부산지부’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불신 사실 “없음”, “반공사상이 투철한 자이며, 혁명정부시책에 순응한 자임”, “현재 이태리, 서독, 瑞西에 요양중에 있음”,

작성일자 작성기관 미상 ‘정치인실태조사표’는 “정치적 부패가 농후한 자로 부정축재별과금 545,708,543원을 통고받은 사실 유함” “자유당의 권력과 금력으로 당선된 자로서 정치부패가 심하여 의당 제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1962. 3. 1.자 ‘종로분실’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사실은 없으나, 향토민층으로부터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편임”, “5·16 이후 가능한 군정에 접근하여 자신의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야심이 다분한 자임”,

1962. 3. 9.자 ‘서울’ 작성 ‘정치인실태내사서’는 “부정사실은 없으나, 향토민층으로부터 별로 호감을 받지 못하는 편임”, “혁명정부를 찬양협조하는 편이나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의 권리만을 득하려는 야심가임”,

작성일자 미상 중정 지부장 작성의 ‘정치인실태조사표’는 “1962. 3.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행방불명된 자임”, “기회주의적 편승분자”, “굴지 사업가로서 정치성분은 부패성이 있으나 제한은 하지 않으며, 정책상 문화사업면에서 이용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작성일자 미상 부산지부 작성 ‘정치인실태조사표’는 “반공사상이 확고한 자임”, “부정축재 9억 환에서 실사 결과 4억 환이 감소되고, 관세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중이며 본명은 일본 체류중임”, “부일장학금 관계로 찬양신망이 있음”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중정의 구속수사

1962. 1. 27. 김지태(당시 54세)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병원에 입원중일 때, 3. 27. 중정 부산지부는 부정축재처리법, 외환관리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등의 9개 혐의를 적용, 부산일보 전무 겸 부일장학회 상임이사 윤우동, 조선견직 전무 배정기, 한국생사 총무 이상학 및 상무 김정호, 무역과장 조용태, 부일장학회 사무원 배병태, 토지중개인 방순묵 등을 구속한 다음,

2) 1976. 5. 김지태의 나의 이력서, 국정원 제출 인물존안자료, 김지태는 1982. 4. 11. 사망.



김지태의 처 송혜영(당시 27세, 김지태와 1955. 11. 결혼)이 1년 6개월 전인 1960. 10.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반지와 카메라를 휴대, 반입한 것을 이유로 1962. 4. 초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지태의 회사 임직원 10여 명이 중정에 연행, 유치된 첫날 중정 부산지부장 박○○가 군 야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들어와 ‘우리 군이 목숨걸고 혁명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라고³⁾ 겁을 주었다.

이에 당시 법률상으로 법인격이 없는 재단법인 부일장학회 이사회는 1962. 4. 11.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을 정부에 기부하는 의결을 하였고,⁴⁾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는 김지태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징발 사용하고 있던 부산지역 토지 10만여 평을 나라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보고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⁵⁾

김지태가 4. 23. 귀국하자, 중정 서울지부는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하여 중정 부산지부로 압송하였다.

2003년에 발간된 김지태의 전기는 “5·16 직전 박정희 장군이 거사자금 500만 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이를 문전박대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⁶⁾

당시 김지태의 변호인이었던 이성호⁷⁾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지태가 일본에 있을 때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불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신직수가 무조건 일본에서 들어오게 하라고 하여 박정희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후에 신직수가 부산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여 갔더니 다른 경로에 의해 김지태가 석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경찰이 공병기지창 땅, 비서와의 관계, 다이아몬드 반지를 밀수해다 주었다고 보고를 하여 최고회의에 수사품의를 하자 수사지시가 내려왔다. 그런데 김지태가 일본에 가고 없어 김지태를 불러오기 위해 그의 처를 구속하였다. 김지태가 연락을 받고 처가 왜 들어갔냐고 하여 전화로 일단 나오라고 하자 일주일 머물거리다가 김포에 도착한다고 하여 서울지부에 부탁

3) 당시 한국생사 무역과장으로 구속되었던 조용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2007. 1. 5.)

4) 의결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국방부장관이 1963. 10. 21. 김지태에게 보낸 공문내용으로 국정원 발전위는 의결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5)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2006. 8. 19.)

6)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 자명 김지태 전기간행위원회, 2003.

7)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와 군법무관 동기.

해서 부산으로 압송하였다”, “박의장이 황용주에게 얘기해 김지태에게 혁명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김지태의 조선전직회사를 일본 기업인 몇 명에게 시찰해 주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고 김지태에게 전화로 부탁하였는데 거절을 하여 잘못보인 것이다”, “위에서 지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지부장이 나에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하여 그럼 ‘구속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사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박정희 의장과 대구사범 동기이자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부산일보 사장 1962~1963, 문화방송 사장 1964~1965, 정수장학회 이사 1985~1987 역임)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소 김지태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재벌의 속성상 쿠데타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자신이 김지태에게 많은 신세를 진 처지를 고려하여 자금요청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고, 후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⁹⁾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2000. 4. 『진주지』에 자필서명하여 발표한 「5·16과 1군」이라는 기고문에서 “박장군의 군수기지사령관 당시 김지태에 대한 인상은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을 미끼로 부정축재 및 탈세자로서의 인식, 혁명사업에 비협조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으며, 1962년 정초 독대시에 김지태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정부장(김종필)의 승인을 받아 내사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썼다.¹⁰⁾ 위 박○○는 1999년 봄여름호 『의암만수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고한 바 있으며, 그 후 2004. 8. 26.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한 바 있다.¹¹⁾

그런데 위 박○○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당시 박정희 의장을 독대한 것은 사실이나 김지태에 대해 직접 수사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잘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일부 번복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당시 박정희 의장을 독대한 것은 사실이나 잘 알아보라고 한 일도 없고, 박정희 의장이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기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중정은 최고회의에 속했고, 중정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직 국회의원이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기업가인 김지태에 대한 수사를 중정 자체

8) 국정원 발전위 김인두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9) 「5·16장학회의 유물 정수장학회」,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10) 『진주지』, 2000. 4.

11)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에서 당시 『시사저널』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박○○의 진술을 녹음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녹음테이프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고회의의 승인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정 부산지부에서 수사를 주도하였는 바, 5·16 쿠데타 후 최고회의가 3권을 장악한 후 1961. 6. 10. 최고회의가 제정한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정을 두면서, 중정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명을 받으며, 중정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정이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일반 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있었다.

당시 중정 파견 검사였던 정치근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중정 부산지부는 합동수사본부로 경찰, 검찰, 헌병 등이 파견나와 있었고, 검사는 저 외 9명이 파견되었으며, 중정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최고회의 소속인 중정의 수사, 지휘 및 감독을 받았으며, 법률자문을 했던 것 같으며, 김지태씨 사건은 잘 모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 수사과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는 계엄하였기 때문에 중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검사장과 법원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고,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었고, 민간인이라도 중정에서 수사할 수 있었고, 김지태는 저명인사라 중정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김지태 구속 당시 박정희 의장과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란 사람이 지부장실에서 중정 부산지부장 박○○를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까지 주도적으로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¹²⁾

3. 군법회의 재판

현재 수사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군검찰의 공소장과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한 결정문만 남아있는 상태인 바, 중정 부산지부는 부정축재처리법·외국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법·형법·농지개혁법·조세범처리법 등 위반 9개

12) 중앙정보부법 제1조(기능)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칭한다)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6조(수사권) ①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혐의로 김지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한 다음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중정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은 1962. 5. 10. 김지태를 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법 위반·공문서 허위작성(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송혜영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상학 등 3명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로, 윤우동 등 3명을 공문서 허위작성(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하였다.(구속된 10명 중 배정기, 송혜영 등 3명을 석방하여 송혜영은 불구속 기소, 7명은 구속기소) 군검찰의 기소에 대해 군법회의는 재판을 진행하여 5. 24. 김지태에게 7년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2년형 내지 5년형을 구형하였다.

당시 기소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김지태, 송혜영은 1960. 8.에서 9. 사이에 서독 함부르크시에서 100\$ 가량의 독일제 카메라 1대를, 화란 암스텔담에서 6,200\$(2,000만 환) 가량의 에메랄드형 보석 1개를 구입하여 송혜영이 이를 소지하고 1960. 10. 서울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치 않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고(관세법 제197조 위반),¹³⁾

② 1960. 7. 이상학, 김정호는 860만 환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을 알면서 보증수표로 김지태에게 전달했고, 김지태는 이를 조용태에게 교부하고, 조용태는 서독 씨일리스 한국지사 지점장에게 미화 10,000\$로 교환, 서독 본사에 김지태가 도착하는 즉시 수취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불확인증을 받아 이를 김지태에게 전달했고, 김지태는 7. 8.경 이 지불확인을 지참, 출국하여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이상학, 조용태는 김지태의 지시에 의해 1960. 12. 25.부터 1962. 3. 31.까지 도쿄 지사의 신문대금 40,500환과 1961. 11. 12.부터 1962. 4. 14.까지 일본에서의 신문광고료 532만 환 일화 환산액 약 149만 엔 중 자진신고한 44만 엔을 제한 약 160만 엔(105만 엔의 오기로 보임) 상당을 한국생사 연락원으로 하여금 보관, 지출하게 하는 등 불법사용하면서 이를 해외에 도피시켰으며,

김지태, 이상학, 조용태는 대한생사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일본 오사카 소재 트레이딩 회사 등에 수출하고, 1959. 1. 1.부터 1962. 3. 20.까지 인조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의 2%를 수출보상금 수수료조로 미화 300\$ 및 10,000\$(일화로 360만 엔)을 위 연락원으로 하여금 보관 소비 지출케 하는 등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켰고(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13) 관세법 제197조 수출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자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개정 1951.12.6, 1957.1.1.]



제2조, 제4조 위반),¹⁴⁾

③ 김지태, 윤우동은 1956. 2. 15.부터 1962. 1. 19.까지 수십 회에 걸쳐서 부산시 대연동 등 소재 농지 약 12만 2천여 평을 실제 농경자가 아니면서 이를 매수한 후 방순목을 통해 1960. 12. 5. 김지태 외 각 매수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상 필요한 자작농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케 하고, 배병태로 하여금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자작농지증명서를 교부받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허위 자작농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형법 제227조, 동법 제229조 공문서 허위작성 및 동 행사,¹⁵⁾ 예비적으로 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¹⁶⁾),¹⁷⁾

이러한 기소 혐의에 대하여 당시 김지태의 변호인 이성호·김장호·최윤철 등은 변론을 통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¹⁸⁾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도 아니고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변호인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석과 카메라는 휴대품으로 통관 규정에서 서면 외 구두신고도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송혜영이 입국 당시 휴대품과 함께 손에 낀 반지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과 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는 일본 내의 상거래로 개인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와 관계가 없으며, 1960년 이전에는 그 리베이트마저도 없었으며, 형법상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만 범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 한 동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⁹⁾

14)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15)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 농지개혁법 제25조 본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7) 기소된 내용 외에 김지태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8) 법무부장관 1961. 5. 19.~1962. 1. 9. 후일 5·16장학회 상임이사 1962~1965, 문화방송 사장 1963~1964 역임.

19) 김지태의 전기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2003)

4. 재산헌납의 경위

가. 재산헌납과 석방

고등군법회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1962. 5. 24. 7년형을 구형받은 김지태는 동년 5. 25. 부산구치소를 방문한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산일보 등 언론 3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을 하였고,

6. 20.경 부산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이 제시하는 위 토지 10만여 평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기부증서’ 및 언론 3사 주식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지태가 언론 3사 주식 및 토지를 국가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이미 작성되어 제시된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틀 후인 6. 22. 군검찰은 김지태가 죄과를 뉘우치고 국가재건에 이바지할 뜻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지태 등 구속자 전원에 대해 공소취소하였고, 경남지구고등군법회의는 공소기각으로 모두 석방조치하였다.

김지태는 5. 25.에 이미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6. 20.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부산지역 계엄사령관 겸 최고의원인 김용순이 찾아와 ‘박 최고회의 의장의 뜻이라며 김지태의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고,²⁰⁾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수사기록을 봤더니 중죄도 아니고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는 아무 것도 아니고 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혁명정부에 헌납까지 했으니 공소취소로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박의장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다”, “박의장이 김용순에게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김지태를 석방하라’고 지시하여 2~3일 후 석방됐다”고 언급하였다.²¹⁾

이상에 의하면, 김지태의 석방은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이 김지태로부터 헌납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서류를 확보한 다음 최고회의 의장에게 석방을 건의하였고, 최고회의 의장이 계엄사령관에게 석방을 지시하자, 계엄사령관이 군검찰에 석방을 지시하여 군검찰이 공소취소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

20)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21) 고원증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나. 재산헌납의 경위

재산헌납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진술과 기록을 보면, 김지태는 1962. 9. 4. 서울시 아서원에서 군부 관계자 고모 장군, 5·16장학회 초대 이사장 이모 등과 만나 토지이용과 장학회 운용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서류상 자진납부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헌납물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각서를 써줬다”고 기록하였고,²²⁾

1971년 경위서에서 “1962년 당시 중정 부산지부장 박○○에 의해 자신이 부산형무소에 투옥되어 군재의 공판이 진행중일 때 6. 20. 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고원증이 지참해 온 미리 작성한 양도서류에 날인을 강요당하고 쇠고랑 찬 손으로 본의 아닌 날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²³⁾

1976년 『나의 이력서』에서 “내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맞서는 경우 간부들이 희생당하는데다가 회사경영이 엉망이 되어 수천 종업원이 실직하게 될 것이 안타까웠다. 신문사나 방송국은 공영사업이므로 누가 경영하든 이 나라 매스컴 발전에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응할 심산이었다. 구속된 조건 아래 그런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석방된 연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버티었으나 막무가내로 어느 날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⁴⁾

전 경향신문 이사 홍연수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김형욱 부장이 ‘김지태에게 7년형을 구형하니 재산을 다 바치더라’는 등 수시로 김지태를 거론하며 경향신문 매각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²⁵⁾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는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최고회의에서 미리 지시받은 것은 없다. 보석밀수하고, 탈세하고, 공병기지창 땅 먹고, 안성수 사장에게 살고 싶으면 국가에 헌납할 물목을 제시하라고 하여, 이 것을 지부장, 수사국장, 부장,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순으로 보고했다. 헌납물목은 공병기지창 땅,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서울문화방송이었다. 최고회의에서 수락한다는 전문이 왔다. 재산헌납은 김지태를 구속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²⁶⁾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안성수가 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부일장학회 등의 헌납

22) 1962. 9. 4.자 김지태의 자필메모(비망록), 조사기록; 한겨레 2004. 8. 9.자.

23) 1971. 8. 김지태 경위서.

24) 김지태, 『나의 이력서』, 한국농림협회(1976) 8쪽.

25)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26) 김○○에 대한 녹취록, 국정원 제출자료.

물목을 제출하여, 이를 중정 본부 및 최고회의에 보고하자 이를 만에 수락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⁷⁾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는 진실화해위원회 면담조사에서 “그 때 김지태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중정 부산지부장 박○○는 위 기고문에서²⁸⁾ “수사중 김용순 계엄사령관이 자주 본인 사무실로 내방, 사실 내용을 타진”하였고 “본인보고 현재 최고회의 의장의 심정은 김지태 씨 재산 중 부산일보(부일장학회 포함), 문화방송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절충, 합의하자는 요지”였으나 “후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가 교도소를 직접 방문 재산헌납에 날인 받았다고 들었다”고 쓴 바 있고,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1962. 5.경 정보보고를 통해 신직수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지태를 면회, 재산포기각서를 징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고,²⁹⁾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나도 모르게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가 부산에 내려와 부산형무소에서 김지태를 만나 재산헌납 포기각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했다.³⁰⁾

반면,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정희 의장이 ‘중정에서 몇 달 전에 김지태의 재산을 기부받아 놓은 것이 있다. 재산이 자꾸 유출된다고 하니 그것으로 5·16장학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그 말에 따라 그해 6월경 부산에 내려가 재산양도서류에 김지태의 도장을 받았다. 약 15평쯤 되는 부산 군기사 법무부장실(계엄사령부 법무관실)에서 김지태는 모시한복 차림이었고, 수갑이나 포승줄은 전혀 없었으며,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알았소’라고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였고,³¹⁾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지태 가족이 재산헌납의 뜻을 내비치며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측과의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언론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재단법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김지태의 석방조건에 재산헌납물목으로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택해 박정희 의장측에 대해서는 정부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을, 김지태측에는 언론 및 장학사업의 공익재단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양측의 승낙을 받았고, 이를 계기

27) 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8) 『의암만수지』(1999); 『진주지』(2000. 4.)

29)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30) 『시사저널』 2004. 8. 26.

31) 2004. 8. 10.자 『한겨레신문』 인터뷰.



로 재산헌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³²⁾

1962. 6. 5.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손창규는 5·16장학회가 1963. 3. 1. 실질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5·16장학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김지태 씨가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에 회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최고회의에서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³³⁾고 언급했고,

전 5·16장학회 실무간사 김석겸은 “5·16장학회는 밀수 혐의로 구속된 김지태 선생 내외분이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산 시내 토지를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박정희 의장에게 기증한 것을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킨 것으로, 구속기소된 곤경을 면하려고 재산을 최고회의 실력자에게 기증하였다는 속설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³⁴⁾라고 언급하여 강제성을 부인하였다.

한편, 언론사 경영권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제출한 1962. 6. 27. 작성 ‘정치인 동향’은 “김지태는 자기가 경영하던 KV, KU방송국 및 부산일보사 등을 정부에 회사하여 기히 방송국에는 감독관이 파견되어 있는 바, 동 KV방송국은 5·16장학회에서 직접·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7월경부터 중역진을 개편 후 운영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적고 있다.

다. 헌납재산 내역 및 작성 서류

1) 헌납재산 내역

김지태가 헌납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부산지역 토지 252필지 100,147평의 소유명의자는 김지태 외 8명이며, 작성된 기부증서는 9매(서울시 교육청 보존)이다. 이들 토지는 비영리 재단법인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있었다.

- 부산일보(주)(21필지 대연동 18,093평, 개금동 4필지 11,900평)
- 김지태(우동 67필지 9,603평)
- 김기환(개금동 46필지 11,439평)
- 정중철(개금동 11필지 6,469평)
- 배정기(개금동 21필지 11,681평)
- 정순태(개금동 4필지 1,181평)
- 윤우동(개금동 13필지 6,716평, 대연동 47필지 14,539평)

32) 「5·16의 유물 정수장학회」(인터뷰, 『월간조선』 1988년 6월호.

33) 『조선일보』 1962. 6. 5. 기사.

34) 정수장학회 30년지.

- 김종한(대연동 6필지 2,788평)
- 양영기(대연동 12필지 5,738평)

김지태가 헌납한 언론 3사 주식의 내역을 보면, 소유명의자는 김지태 외 15명이며, 권리 이전에 필요한 기부승낙서는 25매(서울시 교육청 보존)이다.

- 김지태 : 부산일보(14,350주), 한국문화방송(7,000주), 부산문화방송(6,000주)
- 윤우동 : 부산일보(3,000주), 한국문화방송(2,0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김종한 : 부산일보(1,000주), 한국문화방송(2,000주), 부산문화방송(1,600주)
- 김진황 : 부산일보(200주), 한국문화방송(2,460주)
- 정종철 : 부산일보(1,0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윤수동 : 부산일보(450주)
- 고의동 : 한국문화방송(20주)
- 김달범 : 한국문화방송(4,000주)
- 이상학 : 한국문화방송(1,000주)
- 이승우 : 한국문화방송(20주)
- 정환옥 : 한국문화방송(500주)
- 김영출 : 한국문화방송(500주)
- 김태윤 : 한국문화방송(500주), 부산문화방송(1,000주)
- 이영택 : 부산문화방송(500주)
- 김기환 : 부산문화방송(500주)
- 이택주 : 부산문화방송(500주)

2) 평가금액

당시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이 위 언론 3사 주식에 대해 감정평가한 총액은 3억 4,875만 960환인 바,³⁵⁾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산일보 주식 : 발행주식의 100% 총 2만 주, 액면가 총 20만 환(1주당 10환), 평가금액 1억 9,285만 6,490환
- 한국문화방송 주식 : 발행주식의 100% 총 2만 주, 액면가 총 2억 환(1주당 10,000환), 평가금액 1억 446만 3,420환
- 부산문화방송 주식 : 발행주식의 65% 1만 3,100주로, 액면가 총 6,550만 환(1주당

35) 언론 3사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흥, 국민, 제일은행 3개 시중은행에서 실시.



5,000환), 평가금액 5,144만 1,050환

3) 문서 작성자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기부증서 9매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김지태 측 인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1명이 동일한 필체로 수증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 이름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후에 다른 사람이 수증자 및 작성일을 보충기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부증서에 날인을 받을 때 수증자 및 월 일란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후일 특정인 1명이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자로 六月 二十 日 및 財團法人五一六獎學會라고 기재하여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기부증서 25매를 면밀히 살펴보면, 김지태 측 인사가 아니라 특정인이 주식수, 수증자, 작성일, 주소, 성명을 공란으로 남긴 채 부동산문자로 작성하여 등사기로 프린트한 양식의 문건에, 특정의 3~4명이 펜으로 주식수, 주소와 이름을 적어 공란을 채운 다음 그 이름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후에 1명이 수증자란에 財團法人五一六獎學會라고 보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지태 외 다른 임원들 명의의 문서에 누가 날인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토지명의자 중 한 사람인 김종한은 문서에 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5·16장학회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 5·16장학회 실무자가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일장학회 간사였던 정순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부일장학회 간사로서 장학생 시험, 선발, 장학금 지급 등만 전담하였고, 이사회 회의 등에는 전혀 참석, 관여치 않았으며, 김지태 소유 땅의 일부가 저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 같은데 당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한국문화방송 사장이었던 김종한은 방송 인터뷰에서 “내 명의로 부일장학회 토지에 대한 기부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³⁶⁾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도 “나는 기부증서에 날인한 적이 없고 재산현납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내 명의의 서명, 날인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

위 고원증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김지태 이외 기부자들의 기부증서는 당시 부산

36) 2005. 5. 20. 방영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정수장학회 강탈인가? 헌납인가?”

37) 위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일보 논설위원 겸 5·16장학회 상임간사인 김석겸 등 실무자들에 의해 날인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⁸⁾

4) 문서 작성일자

당시 5·16장학회 설립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된 기부승낙서 작성일자는 1962. 6. 30.자이고, 기부증서의 작성일자도 1962. 6. 30.자이다. 정수장학회에는 김지태 명의의 1962. 6. 20.자 기부승낙서 3매만 보존되어 있다.

정수장학회 보존 김지태 명의의 기부승낙서 작성일자는 한자 一九六二年 六月 二十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 보관중인 김지태 명의 및 다른 사람들 명의의 주식 기부승낙서 25매의 작성일자는 모두 한자로 一九六二年 六月 三十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 문서를 살펴보면 검은색 ‘二’자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年 六月 三十일로 변조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³⁹⁾ 서울시 교육청에 보존된 김지태 날인의 주식 기부승낙서 3매 및 토지 기부증서 2매의 날짜는 원래 한자 一九六二年 六月 二十일로 기재된 ‘二’자 바로 위에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年 六月 三十일로 고쳐졌다.

김지태 외 다른 사람들 명의의 토지 기부증서도 작성 형식이 동일하므로 한자 一九六二年 六月 二十일로 기재된 ‘二’자 바로 위에 ‘一’을 가필하여 一九六二年 六月 三十일로 고쳐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재산헌납의 배경

황용주가 최고회의 의장측에게 정권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낙을 받았고, 김지태측에게 언론 3사 주식(부산일보 100%, 한국문화방송 100%, 부산문화방송 65%)의 헌납을 강조한 사실, 김용순 계엄사령관이 중정 부산지부장인 박○○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여 최고회의 의장의 심정은 김지태 재산 중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등을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절충, 합의하자는 것이라고 타진하였고, 헌납과정에서는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헌납 배경에 대해서는 최고회의측이 단순히 재산목적으로 언론 3사 등을 헌납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군부세력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서 언론의 필요성이라는

38) 면담녹취록, 국정원 송부자료.

39) 국정원 제출자료.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재산적 가치보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토지는 군사기지로 사용중이었기 때문이다.

마. 재산헌납의 상대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창규는 김지태가 5·16장학회에 희사한 것이고, 김석겸은 최고회의 의장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5·16장학회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법무부장관 고원중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김지태의 헌납재산은 개인한테 바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를 대신하는 혁명정부에 좋은 목적으로 써달라며 최고회의에 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⁴⁰⁾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재산을 헌납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재산헌납 과정에 중정 수사관이 김지태측으로부터 헌납물목을 받아 최고회의에 보고하는 등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관여한 점에 비추어 특정 개인에게 헌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에 재산을 헌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토지에 대하여 포기각서 작성 직후인 1962. 5. 28. 중정은 김지태가 기부한 군(軍)이 사용하던 토지 10만여 평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국방부에 이송하여⁴¹⁾ 국방부가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보다 먼저 5·16장학회가 1962. 9. 4. 등기를 이전하자 내각에서 군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지이므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여 국방부와 5·16장학회측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김지태로부터 국가로 이전하라고 하였으나, 문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5·16장학회에서 국가로 이전하라고 하여 1964. 10. 23. 국가로 증여 형태로 이전된 점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바. 재산헌납의 강제성 여부

5·16 직후 군부세력에 의해 설치된 최고회의는 3권을 장악하여 최고권력기관의 위치에 있었고, 중정은 최고회의의 직속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군사정권 계엄령 하에서 일반 국민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재산헌납 이틀 후 김지태가 석방된 것에 비추어 최고회의 및 중정은 형벌권 행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처와 회사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업인 김지태는 군사법정에서 중형선고 및 회사경영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점,

40) 면담녹취록, 국정원 송부자료.

41) 1963. 3. 27.자 국방부의 '기부출원 부동산 등기이전' 제하 공문(국군시 1261.4-1356) 중 중정 작성 공문(중첩공 060, 1962. 5. 28.)내용 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가 김지태측에게 재산헌납물목으로 언론 3사를 택해 언론 및 장학사업의 공익재단화 필요성을 강조한 점, 중정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〇〇가 김지태 측근인 안성수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한 점,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 신직수가 김지태가 7년형을 구형받은 다음날 부산구치소로 찾아와 김지태에게 이미 작성된 언론 3사 등 재산포기각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한 점, 그 후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이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김지태를 불러 이미 부동산자로 작성된 언론 3사 등 양도서류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형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 관계자들의 재산헌납 요구는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에게서는 형벌 관련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에게서는 피하기 어려운 기업경영 관련 정치적 압력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위 일련의 행위는 공권력이 김지태에게 재산헌납을 강요한 것으로서, 김지태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재산을 헌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기부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에 석방된 점, 김지태가 자신을 구속했던 박정희 정권의 집권 초기부터 재산반환을 요구한 점, 적용된 혐의사실과 기부재산의 비교 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위에서 본 바,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구속상태에서 군법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권력기관 고위관계자가 구치소까지 찾아가 이미 작성된 기부서류를 제시하며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문건에 날인만 한 것을 볼 때 자진하여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헌납 후 반환 요구

김지태는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를 자진해서 헌납할 의사가 없었다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1962. 7.경 “군정에서는 나의 재산을 강취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반환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으로부터 ‘재산헌납은 선의의 기증행위가 아니라 강제로 약탈된 행위로 반환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강제로 헌납된 재산이 자신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군인은 역사적으로 영구히 규탄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⁴²⁾

42) 국정원 부산지부 작성 ‘김지태신원조사서(작성일자 미상)’ 인용 ; 경찰 작성의 ‘김지태의 안동관련 정보보고’(내정치 1962.7.31.)



또한, 1963. 10. 대통령 선거 직후 군사정부가 헌납사건이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제의한 5·16장학회 이사직을 거절하고,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을 5·16장학회에서 분리 운영하되 자신이 주식의 51%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서울신문사를 불하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⁴³⁾

그런데 김지태는 1971. 3. 21. 『조선일보』 인터뷰에서⁴⁴⁾ “요즘 재벌들 중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나도 수년 전 부산일보 등 6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라에 바쳐 부의 사회환원을 시도했었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김지태는 1971. 7. 당시 공화당 김택수 의원으로부터 5·16장학회가 경영난으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을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5·16장학회 이사장 김현철에게 2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매각시 자신이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⁴⁵⁾

1980. 4. 박정희 정권이 종료된 직후에는 “1962. 5. 강탈해 간 재산을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반환청구서’를 5·16장학회에 보내⁴⁶⁾ 문서로 반환을 요구하였다.

5. 인권 침해 여부

공권력이 강요하여 김지태로 하여금 언론 3사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⁴⁷⁾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 등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민주 국가에서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주로 언론기관에 의해서 수집·전달되고 있어 언론기관에 보도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

국정원 송부자료.

43) 1963. 12. 7. 김지태 운영계획서.

44) 김지태 인터뷰 기사, 「나의 기업경영」, 『조선일보』 1971. 3. 27.자.

45) 김지태, 「5.16장학회 이사장 김현철에게 보낸 편지」(1971. 7. 26.; 8. 6.)

46)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보고서.

47)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 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 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

또한 당시 헌법 제15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편집권 또는 편성권이 보장되고 있는 바, 언론기관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경영진 교체와 인사, 경향 또는 방침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할 수 있어 언론의 공공성, 중립성 등 언론자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헌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재산권 및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책임과 의무의 귀속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귀속처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김지태로부터 곧바로 재단법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재단법인 5·16장학회는 1962. 7. 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작성 및 임원선출을 한 다음, 7. 14. 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창립총회는 이관구, 고원증 등 7명이 모여 참석자 전원을 이사로 선정하고, 이사장에 이관구, 상임이사에 고원증을 선출하였다. 또한 재단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 서류를 심의하였다.⁴⁸⁾

전 법무부장관 고원증은 국정원 발전위 면담에서 “박정희 의장이 기부받은 재산이 있다면서 장학회를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하여 문건을 준비해 김지태에게 가서 날인을 받았다. 박정희 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였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재단 이사회가 끝난 다음 5~10분 박정희 의장을 면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했다.

5·16장학회 설립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목적 : 학비보조, 학술연구비보조, 해외유학비보조, 문화보급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체육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 초대 임원 : 이사장 이관구, 상임이사 고원증, 이사 윤일선 김연수 김영기 이병철 김용우
- 기본재산 : 부산일보 주식 100%(2만 주),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2만 주),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1만 3,100주), 토지 100,147평
- 기본재산 평가액 : 주식 34,876,096원, 토지 50,394,184원, 도합 85,270,278원
- 1962년 기부수입 : 6. 30. 고공도 1,297,000원, 스코필드박사 37,250원, 7. 25. 김신일 129,700원, 12. 22. 이병철 10,000,000원

48) 정수장학회 30년지 참조.



재단법인이란 비영리 목적에 출연(出捐)된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 설립에서 재산의 출연은 가장 중요한 필요요건이다. 민법 제 43조에 의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산출연자가 아닌 7명이 초대 이사진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였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재산헌납에 개입한 고원증이 그 재산을 기초로 설립작업을 하고 상임이사가 되어 운영하였다. 또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에 대한 공부(公簿)상의 소유권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당시의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지태로부터 곧바로 5·16장학회로 9. 4. 및 7. 31. 각각 이전되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 및 소유명의 이전과정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가 결여된 문제점이 있다.

그 후 토지의 경우 1964. 10. 23. 5·16장학회로부터 국가에 증여형태로 등기가 이전되어 군(軍)이 사용하여 왔고, 대부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주식의 경우 부산일보 발행주식 100%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문화방송의 주식 100%의 경우 1971년 유상증자하면서 30%주식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부산문화방송 주식의 경우 문화방송에 1981년 51%를 양도한 후 1985년 나머지 주식도 문화방송에 양도하였다.⁴⁹⁾

나. 공익목적 사용 여부

5·16장학회는 위와 같이 초대 이사진이 구성된 이래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 이사진에 포함되어 운영을 주도하여 왔고, 1982. 1.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까지 변경하였다.⁵⁰⁾ 공익재단법인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다.

재단법인 설립 후, 언론 3사 경영권도 5·16장학회가 행사하게 되었다. 언론 3사 경영권이 5·16장학회로 양도되면서 5·16장학회 이사 중에서 부산일보 사장 또는 한국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하게 된다.⁵¹⁾ 또한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의 주식배당금이 연 3천만 원에

49) 정수장학회 30년지 참조.

50) 동아일보 2004. 8. 3.자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正)자와 육영수(陸英修) 여사의 수(修)자를 딴 명칭이다. 이 이름이 상징하듯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1) 권오현, 황용주, 송정제, 윤임술, 정한상 이사는 부산일보 사장, 고원증, 황용주, 이환의, 이진외, 이용희, 황선필, 강성구 이사는 한국문화방송 사장.

불과하나 기부금으로 연 20억 원을 지급받고 있고, 적자상태인 부산일보로부터도 기부금으로 연 8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⁵²⁾

또한, 1962년 설립 당시 5·16장학회의 사업목적은 학비 보조, 학술연구비 보조, 해외유학비 보조, 문화보급을 위한 사업 보조였기 때문에 언론사 경영은 5·16장학회의 목적사업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언론사의 목적은 특정 장학사업보다 훨씬 공공성을 갖는다. 문화방송과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장학사업 경비조달의 수단이 되는 것은 공익목적의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 당시 언론 3사는 개인이 소유했던 언론이었지만, 공익목적을 위해 헌납된 것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예를 들면, 언론사 주식이 공익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려면 장학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목적으로 비영리적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7. 책임의 귀속

최고회의 구성원 및 중정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산권 박탈 및 언론자유를 침해한 경우 그 행위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당시 최고회의는 최고국가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며, 중정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국가는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한 강요행위로 인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것이 밝혀진 만큼, 국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다.

5·16장학회에 출연된 주식의 경우 재산헌납에 개입한 전직 고위인사가 재산출연 등 재단설립 작업을 하고, 그 구성원이 되어 운영하였으며, 국가에 헌납된 재산이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16장학회로 소유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정수장학회는 보유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에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헌납된 재산으로 설립된 만큼 법령에 의거 그 운영의 적법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52) 정수장학회.



VI. 결론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의 승인을 받아 김지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중정에 의해 1962. 3. 27. 회사임원 8명이 구속된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가 구속되었으며, 김지태 등 7명이 구속기소, 그의 처가 불구속 기소되어 군법회의에서 재판중이던 5. 24. 김지태가 7년을 구형받은 다음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제시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제시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를 후 석방된 사건이다.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최고회의 및 중정 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회사임원들과 함께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 평 및 김지태 소유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 3사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5·16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가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반하며,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다.

2. 권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헌법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본법에 의거 조사를 하여 진실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 등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헌납재산의 경우 책임의 귀속에 따라 원상회복함이 상당하다. 기본법 제4장에 의거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별첨〉 정수장학회 및 주식보유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인적 구성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30년지(1994) 83쪽 이하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정수장학회 이사장 초대 1962~1965 이관구 (재건국민운동본부장)
- 2대 1965~1968 엄민영 (최고회의 의장 고문, 내무부장관)
- 3대 1968~1979 김현철 (내각수반)
- 4대 1979~1980 최석채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 문화방송 이사 1973~1980)
- 5대 이사장 1980~1988 (상임이사 1965~1971, 이사 1975~1980) 조태호 (박정희 대통령의 동서,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이사 1968~1971)
- 6대 1988~1992 김창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7대 1992~1995 김귀곤 (장학금 수혜자 모임 상청회 고문)
- 8대 1995~2005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학원 이사장)
- 9대 2005~현재 최필립 (박정희 대통령 의전비서관)
- 상임이사 1962~1965 고원중 (법무부장관, 문화방송 사장 1963~1964)
- 이사 1988~1992, 상임이사 1992~1998 손미자 (영남학원 이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이사 1965~1974 서정귀 (박정희 대통령 대구사범대 동기, 영남학원 이사, 문화방송 이사)
- 이사 1966~1974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1963~1969, 중정부장 1970~1973, 영남학원 이사)
- 이사 1979~1980 이환의 (문화방송·경향신문사장 1971~1980)
- 이사 1980~1984 박영수 (박정희 대통령 정부비서관 1966~1969)
- 이사 1980~1988 이진의 (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 1980~1982)
- 이사 1984~1988 이용희 (문화방송 사장 1982~1986)
- 이사 1985~1987 권오현 (부산일보 사장 1980~1986)
- 이사 1985~1987 황용주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 부산일보 사장 1962~1963, 문화방송 사장 1964~1965)
- 이사 1987~1988 김창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이사, 감사 1987~1992 김정옥 (영남학원 이사)

- 이사 1988~1992 송정제 (부산일보 사장 1988~1994)
- 이사 1988~1997 진혜숙 (박정희 대통령 총무비서관 1965~1966)
- 이사 1988 황선필 (문화방송 사장 1986~1988)
- 이사 1987~1988 윤임술 (부산일보 사장 1986~1988)
- 이사 1992~1995 강성구 (문화방송 사장 1993~1999)
- 이사 1994~1996 정한상 (부산일보 사장 1994~1997)
- 감사 1963~1965 고주상 (문화방송 감사)
- 감사 1971~1972 문춘식 (문화방송 감사)
- 감사 1975~1987 최승효 (광주문화방송 사장)
- 감사 1979~1986 한준우 (대구문화방송 사장 1975~1986, 영남학원 감사)
- 감사 1988~1995 이운경 (부산일보 감사 1993, 영남학원 감사)
- 부산일보 사장 1963~1964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장)
- 부산일보 사장 1964~1971 최세경 (공보부 차관, 국회의원)
- 부산일보 사장 1973~1980 왕학수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
- 부산일보 사장 1997~2006 김상훈 (대구사범 출신)
- 부산일보 사장 2006~김종렬 (부산일보 상무이사)